진안우체국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제1회 상시계약집배원 채용 공고

진안우체국 시행 우편물 집배 관련 업무를 담당 할 상시계약집배원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진 안 우 체 국 장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근무예정우체국	채용인원	담당업무내용
상시계약집배원 (무기계약직)	진안우체국	1명	- 우편물 수집 및 배달업무 - 기타 부대업무

2. 근로조건

가. 신분 및 근로계약 : 비공무원 신분의 무기계약직근로자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

나. 보수 : 기본연봉 **약 19,000천원** + 실적수당 등

- ㅇ 기본연봉 : 기본급, 운전수당, 상시집배특별수당, 명절상여금, 경평상여금
- ㅇ 기타수당 :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 ㅇ 실적수당 : 초과근무수당(시간외, 휴일), 상시출장여비 등
- ㅇ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 근무일수 및 시간 : 주 5일(평일 월~금)

o 1일 8시간 근무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초과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라. 휴가 : 연차 유급휴가, 공무 유급휴가, 특별 유급휴가 등

마. 집배업무 특성

o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 일평균 1,000여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상당(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를 자동이륜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하여 배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3. 응시자격

가. 최종 시험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나. 공고일 현재(2016.6.16.) 전라북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성실한 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자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마. 자격증(필수)

ㅇ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와 함께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동시에 소지(원서접수 마감일 현재)하고 자동이륜차 운전이 가능한 자

바.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

※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서류전형시 우대요건

가.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ㅇ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분 한)

나. 집배, 집배보조 및 우편물구분보조, 우체국택배 및 택배보조 업무를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재택·통상·소포위탁배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택배사 배달 근무경력자 포함)

※ 민간택배사 근무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제출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5. 시험방법

시험단계 /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상시계약집배원	서류전형	실기 및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만을 판단**

○ 다만,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다음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로 제한 선발할 수 있음

[서류전형 심사 기준]

심사항목 / 배 점	자격요건 만족도	직무관련 경력	무사고 경력	정보화 자격증	자기소개서 충실·성실성	취업지원 대상자 등
100점	40점	20점	20점	10점	5점	5점

※ 취업지원 대상자 등은 「4. 우대요건」 '라' 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며, '정보화 자격증'과 '취업지원 대상자 등'의 심사항목에 2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 각각 1개의 자격만 반영함

○ 직무관련 경력 환산 점수

구분	직무관련 경력 환산	환산경력 채점 기준
직무관련 경력	집배업무, 집배·우편물구분 보조업무	- 2년 이상 20점, - 1년 6월 이상 15점 - 1년 이상 10점, - 6월 이상 5점
	재택·통상·소포 위탁배달 경력 (민간택배 배달 경력 포함)	- 2년 이상 20점

나. 2차시험 : 실기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측정 및 면접 평가

1) 실기시험

- 체력 측정(3종목) :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소포상자 이동하기
- 검정기준표 : ‘별첨’

2)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과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과 발전가능성 등

※ 실기시험(체력측정)에서 탈락할 경우 면접시험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최종 합격자 결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에 의거 “면접시험평정표”의 평정(상·중·하, 점수)결과를 집계하여 결정

ㅇ **위원 과반수가 아래와 같이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 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ㅇ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6. 29.(수),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 진안우체국,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나. 실기 및 면접시험 : 2016. 7. 1.(금),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7. 11.(월),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 진안우체국,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6. 6. 23.(목) ~ 2016. 6. 27.(월) 09:00～18:00

※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함

나. 접수처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14 진안우체국 우편물류과 (우 55432)

☎ 063-430-5762

다. 응시원서 교부방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의 서식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진안우체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567/)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www.inja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의 채용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라. 접수방법

○ 지정된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가능(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접수유무를 확인)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상시계약집배원 응시원서 재중」** 표시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실기・면접시험 당일 교부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붙임1 서식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 부착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2,3 서식 사용】

다.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인터넷 발급) 1부

○ **면허취득일 이후 최근 10년간의 운전경력(교통사고, 교통위반)이 표시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마. 주민등록초본 1부(단, 남자는 병적사항이 기록된 것,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바. 경력증명서 1부 (집배, 집배보조, 우편물구분보조, 우체국택배 및 택배보조, 재택·통상·소포위탁배달원 및 택배회사 배달업무 근무 경력자에 한함)

※ 경력사실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 민간택배사 근무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제출

사.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각 증명은 해당자에 한함)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7 서식 사용】

※ 각 서류는 공고일(2016.6.16.)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 진안우체국,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기사항부존재확인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상시계약집배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상시계약집배원은 비공무원이며,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

마.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바.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실기시험 실시 중에 발생되는 인적 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안우체국 우편물류과(☎ 063-430-5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체력검사 기준표

구 분		가	부
검사종목	기준시간		
윗몸 일으키기	1분	27개 이상	26개 이하
팔굽혀 펴기	1분	19개 이상	18개 이하
소포상자이동하기	30초	우편물 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 가능	우편물 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불가능

실기시험 방법

종 목	측정방법
윗몸 일으키기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30cm 간격으로 벌리고 무릎은 직각으로 굽혀 세우고 두손은 머리 뒤로 깍지껴 잡는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복근력만을 이용 몸을 위로 일으켜 굽힌다. -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 다시 누운 상태로 돌아간다. - 누운 자세에서는 깍지 낀 양손, 어깨 등이 반드시 메트와 접촉되어야만 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 부정확한 동작 : 깍지를 풀거나,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 등의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함
팔굽혀 펴기	[남 자]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려 30cm 높이의 봉을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 잡고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팔이 90도이상 굽혀 가슴이 봉에 닿을 정도까지 굽혔다가 다시 완전히 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여 자]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마루에 대고 엎드려 30cm 높이의 봉을 손으로 짚어 팔을 봉과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팔이 90도이상 굽혀 가슴이 봉에 닿을 정도까지 굽혔다가 다시 완전히 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소포상자 이동하기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출발선의 소포상자 앞에 선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두 팔로 20kg 상당의 소포상자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10m를 이동 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는다. - 도착 장소에 준비된 20kg 상당의 소포상자를 어깨에 메고 빠른 걸음으로 반대편으로 10m를 이동한 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는다. - 30초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몸놀림과 소포 취급 태도를 통해 소포 등 우편물 취급의 가부 여부를 판단